

계약번호 : FSyyyymmddxzz

거래기본(공급)계약서

(주)에프에스티(이하 ‘에프에스티’라 한다.)는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_____(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에프에스티”와 “협력회사”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에프에스티”가 요청하는 물품을 “협력회사”는 적기에 공급하고 “협력회사”는 이에 따라 안정된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분업적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다.

제 2조 공급계약의 체결

본 계약은 “에프에스티”와 “협력회사” 간의 공급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계약의 내용은 개별계약서(발주서 등 전자문서를 포함)의 내용에 따른다.

제 3조 개별계약의 체결

- 1) “에프에스티”는 개별계약을 반드시 문서(발주서 등 전자문서를 포함)로 발행해야 한다.
- 2) “협력회사”가 발주서 등 개별계약의 내용 접수 후 3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4조 개별계약의 변경 및 취소

-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에프에스티”와 “협력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발주서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변경할 수 있다.
- 2) “협력회사”는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제조과정을 중단해야 하며, 자재의 주문 취소 등 변경 및 취소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5조 납기 준수

- 1) “협력회사”는 “에프에스티”의 주문서 상의 납기에 응하지 못할 시에는 주문서 입수 후 3일 이내에 “에프에스티”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가 없을 시에는 “에프에스티”의 납기에 응한 것으로 본다.
- 2) “에프에스티”는 “협력회사”가 주문서 상의 납기 내에 계약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치 못할 시는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발주 금액의 1.5/1000을 지체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이에 대해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고 “에프에스티”가 인정할 시는 지체 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6조 계약 물품 인도

- 1) “협력회사”는 주문서 상에 표기된 “에프에스티”의 지정 장소까지 계약 물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 2) “에프에스티”와 “협력회사”는 상기1)항의 인도 장소에서 물품 인도 즉시 양자 입회 하에 인도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며 “에프에스티”는 물품 수령을 완료한 후 즉시 인수증(보관증)을 “협력회사”에게 발급한다.

제 7조 검사 방법 및 기간

1) 검사 방법

납입 물품의 검사는 “에프에스티”와 “협력회사”의 협의 하에 실시하며, “협력회사”는 자재 납품 시 “에프에스티”가 제시 또는 상호 협의된 검사 기준에 의해 실시된 자체 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2) 검사 시기

“에프에스티”는 “협력회사”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협력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검사 기간에 대하여는 납입 물품의 특성상 검사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에프에스티”는 합리적 기일을 “협력회사”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조 대금 지급

납품된 물품 대금의 지급은 “에프에스티”와 “협력회사”의 상호가 수령 및 지급의 편의상 월 1회 마감 집계하여 계산하고, “에프에스티” 결제 조건에 의거 지급한다.

제 9조 품질 및 하자 보증

- 1) “협력회사”는 “에프에스티”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납품 후 2년 또는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이의 하자로 인하여 “에프에스티”에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은 “협력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 2) 납입한 물품이 검수 결과 하자가 있을 시 그 하자가 “에프에스티”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지 않은 경우 “협력회사”는 “에프에스티”의 선택에 따라 반품 교환 또는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 3) “협력회사”는 “에프에스티”에게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하도급사업자의 변경, 금형수정, 자재 및 검사자 변경 등의 경우 “에프에스티”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 한다.
- 4) “에프에스티”의 공정 중 발생한 불량이 “협력회사”의 자재 불량이 그 원인으로 판명되고 이로 인하여 “에프에스티”에게 손해가 발생된다면 “협력회사”는 그 배상 책임을 진다.

제 10조 피해 및 손해 보상

“협력회사”가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발생한 다음의 제반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에프에스티”가 제시한 각종 안전 수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협력회사”가 보상한다.
- 2) 양자 상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합의치 못

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 기술 향상 및 품질 개선

“협력회사”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생산 공정의 개선 및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제 12조 재외주

“협력회사”는 계절성 수요 초과 물품이나 자체적인 계열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에프에스티”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계약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조 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협력회사”는 “에프에스티”에게 대한 의무의 이행을 면할 수 없다.

제 13조 비밀 보장

“협력회사”는 제조 위탁에 의하여 알게 된 “에프에스티”의 업무상 기밀(도면, Film, 자료, 금형 등 “에프에스티”의 모든 Know-how)을 사전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조 공업소유권의 침해 금지

“에프에스티”의 소유로 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협력회사”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에프에스티”의 사양에 의해 “협력회사”가 승인을 받은 제품은 “에프에스티”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력회사”가 임의로 제조, 판매할 수 없다.

제 15조 보증의 면책

“협력회사”는 본 계약하의 모든 공급 품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 비밀, 기술 선취권, 또는 채무, 변경에 관한 제 3자의 클레임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협력회사”는 그러한 제 3자의 요구에 수반되는 모든 클레임, 요구사항, 비용, 소송 등으로부터 “에프에스티”가 해가 없도록 배상 또는 보전하는 데 동의한다.

제 16조 계약의 해제

1) “에프에스티”는 “협력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가. “협력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나. “협력회사”가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 “협력회사”가 제 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등을 받아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협력회사”에 대해 파산 또는 회사 정리 절차가 시작될 경우

마. 기타 “협력회사”가 계약 내용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불가능한 경우

2) “에프에스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약정을 중도에 해제코자 할 때는 “협력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행동규범 준수

“에프에스티”는 “협력회사”와 거래에 있어서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 “에프에스티”의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협력회사”는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에프에스티”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에프에스티”는 에프에스티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 18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일방 당사자에 의해 본 계약 만료 전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단 계약 만료 후 1개월 내에 종료 의사를 표시할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제 19조 계약 해석

본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변경 사항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에프에스티”

124-81-23841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6길 15-23

주식회사 에프에스티

대표이사 장 경 빈

(인)

“협력회사”

대표이사

(인)